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선교총회

총회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선교총회 10대 강령

서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한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총회 소속의 모든 지교회들과 성도들이 함께 나아갈 방향으로 이 10대 강령을 채택하고,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

1.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본질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2.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3. 초교파적으로 교리와 교단을 뛰어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
4.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5.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이 땅의 약자와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
6.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노회, 총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서 신학적 정체성을 공유하며, 상생과 화합을 통해 거룩한 연합을 이룬다.
7.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의 감격 회복을 위해 성령의 뜨거운 임재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참된 회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추구한다.
8.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올바른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9. 영성과 인품, 전문성을 겸비한 영적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섬김과 본이 되는 거룩한 리더십을 양성한다.

10.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종말론적 신앙과 재림 신앙으로 오늘의 삶에 충실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행동한다.

우리 총회는 이상의 10대 강령이 단지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각 지교회의 목회 현장과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경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것을 하나님과 모든 교회 앞에 엄숙히 서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선교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성경 중심적인 신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을 준수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취케 하고, 복음전파를 통한 영혼구원과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회는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 조직하며, 총회 총대 기준은 총회 임원회의와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되며 총회 규칙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

제4조(위치) 본회의 본부 사무소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둔다.

제2장 임원

총회 임원은 총회 회원중에서 다음과 같이 둘수 있다. 단,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원만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필요시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원직을 추가할수 있다.

제5조(임원직)

1. 총 회 장 : 1인
2. 부 총 회 장 : 4인까지 둘수 있다

3. 서 기 : 1인
4. 부 서 기 : 1인
5. 회의록서기 : 1인
6. 부회의록서기 : 1인
7. 회 계 : 1인
8. 부 회 계 : 1인
9. 총 무 : 1인
10. 부 총 무 : 1인

제6조(선거방법)

1. 총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총회장은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2. 총회장을 제외한 총회임원은 총회 회원중에서 총회장이 선임한다.
3. 총회임원은 임기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4. 기타 위원회 위원장, 총회 직할 기관의 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제7조(임무)

1. 총회장은 본회 회무 일체를 통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
3. 서 기
 - 1) 총회 개회를 위한 준비 업무를 주관한다.
 - 2)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총회 임원회에 전한다.
 - 3) 각종 공지 사항들을 취합하여 각 노회에 발송한다. SNS로 전달 가능하다
 - 4) 총회 회의 절차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총회 회의 참석과 위임여부를 확인하며, 총회원들에게 전달사항들을 주관한다. 모든 전달사항들과 확인사항들은 SNS로 전달 및 확인이 가능하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가 유고한 때에 이를 대리한다.
5. 회의록서기는 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위임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가 유고한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
7. 회 계
 - 1) 본회 모든 재정 출납을 관장하며 본회의 결의대로 금전을 지출하되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지출한다.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1회에 300만원 이내로 하며, 1회에 300만원이 초과한 금액은 실행위

원회(실행위원회 구성전 임원회)를 통하여 결정을 하고, 500만원 이상일 때는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단, 총회 주요 모임, 회의 또는 총회 일상적인 관리 업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에 해당할 경우 1회당 30만원이내의 범위에서 총회장이 지출을 결정할 수 있다

2) 매년 수지결산을 본회에 보고하고 장부 검사를 받는다.

3) 재정 수입은 은행에 예금하며 매년 감사위원장의 감사를 받는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가 유고한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

9. 총무는 총회장의 지시에 의해 대내외 제반 사항을 보좌하되, 대외적으로는 총회장과 함께 총회 대외 업무를 대행한다.

10. 부총무는 총무의 활동을 보좌하되, 총무의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제3장 법체계, 위원회

제8조 법체계

총회는 다음과 같은 법체계로 운영하며 각 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속되며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개정을 의결할 수 있으며, 개정은 총회 임원회의 의결로 실행하며, 정기총회를 통해 추인 의결한다.

총회의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최고법 : 헌법, 규칙

2. 부서 조직법 : 노회 규칙, 각 기관의 정관, 운영규정(위원회, 상비부)

3. 사업시행법(내규) : 시행령 - 시행세칙 - 시행지침

제9조(위원회)

1. 실행위원회

1) 조직

본 위원회는 각 위원회 위원장과 총회임원, 총회소속 기관장으로 구성한다.

2) 임무

(1) 총회의 정책을 연구하되 총회에 현의한다.

(2)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

(3) 타 교단과의 교류나 우호 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

(4) 총회 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을 추인 의결하며, 실행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은 총회에서 추인 의결한다. 단, 실행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을 경우 총회 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은 총회에서 추인 의결한다.

2. 상설위원회

본 총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수 있다.

- (1) 감사위원회
- (2) 고시위원회
- (3) 선거관리위원회
- (4) 신학위원회
- (5) 교단발전위원회
- (6)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 (7) 총회부흥사회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되 노회임원 또는 총회임원을 역임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각 상임위원회의 관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감사위원회 : 전문직으로 선출하며 총회 제반업무와 행정 및 재정 감사를 실시한다.
- ②. 고시위원회 : 총회 고시위원회에 위임된 고시업무를 관장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 : 총회에서 위임한 선거사무를 관장한다.
- ④. 신학위원회 : 총회 산하 직영 및 인준 신학교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⑤. 교단발전위원회 : 교단의 발전과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 ⑥.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 이단과 사이비를 연구하여 소속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 ⑦. 총회부흥사회 : 총회 소속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의 영성 훈련 업무를 관장한다.

기타 상설위원회의 제반사항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와 각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필요시 총회 임원회의를 통해 다양한 상설위원회를 추가로 둘수 있다.

3.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총회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추가할수 있다

제4장 총회소속 기관

제10조(기관운영)

1. 총회가 필요시 직영 신학교를 둘수 있다.

2. 신문사를 비롯한 출판사를 둘수 있다.
 3. 각 노회별로 신학교를 둘수 있다.
 4. 총회 인준에 의해 선교회, 상담센터, 복지센터 등을 둘수 있다.
 5. 총회의 재교육 기관으로 총회목회대학원(학술원)을 둘수 있다.
- 기타 총회 기관의 필요성인 인정된 경우 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추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승인권)

본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기관의 조직 승인권 및 각종 승인권은 1차적으로 총회 임원회의, 2차적으로 실행위원회, 최종적으로 총회에 있다.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시행하면서 추후 실행위원회와 총회에서 추인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

총회의 모든 승인권과 의결권은 해당 기관 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을 득할 때 의결 승인된다.

제12조(인준권)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관개정, 기본재산의 변경, 새로운 의무부담, 해산, 해산시 잔여 재산처리 등에 관한 인준권을 가지며 총회헌법과 규칙 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정관)에 대하여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60일 이내 개정하고 보고해야 하고, 불이행시 본회가 직접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연합기관

제13조(연합사업참여)

본회는 본회가 승인하는 국내외 정통 공교단의 주체로 결성된 연합기관에 이사(위원)을 파송하여 연합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이사(위원)파송)

본회는 제17조에 의한 연합사업추진을 위하여 총대 중 이사(위원)를 파송할 수 있다.

제15조(파송이사(위원)임기)

본회가 파송한 이사(위원)의 임기는 해 연합기관의 정관, 규정에 의하되 총

회결의로 소환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16조 총회 재정은 각 노회 상납금과 헌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상납금은 연간 납부토록 한다.

제7장 집회

제17조 총회는 매년 9월-10월에 개최한다.

총회 소집 장소 및 일시는 총회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부득이한 일로 개최일과 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한다

제18조(임원회)

1.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
2. 총회로부터 수임받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케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회원권 제한)

총회의 결의를 순복치 않는 자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회원권을 정지할 수 있다.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8장 보고 양식과 문서

제20조(노회 상황보고 양식)

1. 강도사 인허, 전도사 시취
2. 목사 임직, 이명
3. 목사 후보생 명부

4. 교회 설립, 분립, 합병, 폐교, 건축 상황
5. 교회 형편(교인 증감, 기도 형편, 성경공부와 열람, 전도 형편)
6. 노회 신학교 형편
7. 교회 특별사건
8. 통계 현황

직원수 : 목사, 장로, 강도사, 전도사

노회 상황보고는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각 노회는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총회 서기는 이 보고를 접수 수합하여 총회 회의록에 부록한다.

제21조 총회 서기는 총회 개회시 총 회원의 명부와 회의절차를 작성 인쇄하여 각 회원에게 배부한다.

제22조 각종 보고, 청원, 헌의, 문의 등은 매 건에 각각 1부씩 제출하되 총회 소정 양식을 사용한다. 제출방식은 SNS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장 검직, 겸임과 목사안수 및 정년퇴임

제23조(목사의 이중직 가능) 목사의 이중직이 가능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대표, 전임교원, 정규직직원 등)을 가질 수 있다.

제24조(겸임 가능) 헌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한 당연직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겸임할 수 있다.

제25조(여성목사안수 가능) 본 총회는 여성목사안수 제도를 시행하며, 목사안수 제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6조(목사안수 가능 연령) 목사안수 가능 연령으로 최소 연령은 성년이상으로 하며, 최대 연령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7조(정년퇴임) 본 총회는 정년 퇴임 연령을 정하지 않는다. 단,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제10장 회의, 자격과 설립요건

제28조 본 총회의 결의 요건은 각 해당 회의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된다.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정을 위임할수 있다, 위임은 SNS로 가능하다

제29조 각 회의 및 위원회 자격요건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30조 노회 설립요건은 정회원을 포함한 총회 회원 5명 이상으로 하여 설립 가능하다. 지역노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회를 설립할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31조(규칙의 개정) 본회의 규칙을 개정할때는 일반적인 인준 승인 기준인 총회 임원회의, 실행위원회, 총회 결의를 통해 개정될수 있다

총회 임원회의 결의시 우선 시행하고, 추후에 실행위원회와 총회에서 추인의결한다. 의결 기준은 해당 회원의 과반 이상 참석에 2/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제32조(강도사고시)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은 신대원 5학기 이상으로 한다. 필기고시에 합격한 후 면접고시에 합격해야 최종합격자로 한다.

제33조(목사의이명) 총회내에서 다른 노회로 이동할때는 이명증서를 받아서 이동하고자 하는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총대) 총대는 매년 정기노회에서 결정하되, 총회 임원과 실행위원은 당연직 총대이며, 당연직 총대를 제외한 파송 총대는 각 노회에서 정한다. 파송 총대의 기준은 노회 정회원 5명당 파송 총대 1명으로 한다.

제35조(상납금) 노회에서 총회로 매년 상납하는 상납금은 노회 회원의 노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노회 회원 기준으로 총회 임원회의에서 정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상납한다. 현재 상납금 기준액은 노회비의 1/3 이다

제36조(소집 및 배포와 의사소통) 총회 내의 모든 소집과 유인물 배포는 필

요시 SNS로 가능하며, 참석의사 표시와 위임 등의 각종 의사소통은 SNS로 할수 있다.

제37조(재산의귀속) 본회는 유지재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재산, 노회재산, 총회재산 등을 귀속하지 않고, 각 기관의 정관과 의결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 처리 할수 있다.

제38조(의결권) 본회의 원활한 활동과 소속기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총회 임원회의를 통해 의결한 사항은 시행을 하면서 실행위원회 추인과 총회를 추인과정을 거친다. 단, 실행위원회가 운영되지 아니할때는 총회 임원회 결의로 시행하고 추후 총회 추인과정을 거친다.

각 회의 의결기준은 해당 회원 과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이상 동의로 의결된다. 모든 회의는 SNS 로 가능하며, 위임여부도 SNS로 통보 가능하다.

예외적인 경우는 총회 규칙 개정의 기준만 과반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2/3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부칙

1. 본 규칙은 임시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임시총회 등의 회의를 SNS로 진행할수 있다.

개정일자 2024년 4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선교총회